대 구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6타경100114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1290(중복)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1. 16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유상목 전자서명완료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최선순위 설정	2013. 9. 12. 근저당권			배당요구종기	2026. 3. 30.
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
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손기웅	전부	등기사항전부증명서	주거 임차권자	2024.04.09.	100,000,000	1,850,000		2024.04.09.	

<비고>

손기웅: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등기일은 2025. 4. 22.임. 신청채권자임.
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
비고란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6타경100114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555
수성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
115동
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1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7층 아파트
피로티층 계단실 40.2565㎡
1층 아파트 292.2949㎡
2층 아파트 292.2949㎡
3층 아파트 292.2949㎡
4층 아파트 292.2949㎡
5층 아파트 292.2949㎡
6층 아파트 292.2949㎡
7층 아파트 292.2949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층102호
철근콘크리트구조 118.9060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555
대 94053.9㎡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대지권의비율 : 1. 94,053.9분의 60.4171

감정평가액		717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11.11	717,000,000	71,700,000
2회	2026.12.09	501,900,000	50,190,000
3회	2027.01.14	351,330,000	35,133,000
4회	2027.02.11	245,931,000	24,593,100